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66
----------	-------

발의연월일 : 2018. 6. 28.

발의자 : 주호영 · 김현아 · 성일종
최연혜 · 이채익 · 추경호
박완수 · 이종구 · 박명재
정양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예술원과 대한민국학술원은 우리나라 예술창작과 진흥,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 및 학자를 우대·지원하는 기관임. 그러나 자격 기준 및 임기 등 「대한민국예술원법」과 「대한민국학술원법」의 일부 조항이 형평이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함.

이에, 회원의 결격 사유 명시 등 자격 요건 강화를 통해 예술원 회원으로서의 사회적 의무 및 책임감을 부여하며, 4년 연임제로 운영되고 있는 회원의 임기를 대한민국학술원과 동일하게 종신제로 전환하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토록 함.

주요내용

가. 회원의 결격 사유 명시 등 자격요건 강화를 통해 예술원 회원으로서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감을 부여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4년 연임으로 되어 있는 회원 임기를 종신제로 함(안 제6조).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회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

② 회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출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
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③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4년으로 하되, 연임(連任)할 수 있다”를 “평생 동안으
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6조(회원의 임기 등) ① 회원의 임기는 <u>4년으로</u> 하되, 연임(<u>連任</u>)할 수 있다. ② (생 략)	<p>제4조의2(회원의 결격사유) ①</p> <p>「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p> <p>② 회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출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p> <p>③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p> <p>제6조(회원의 임기 등) ① ----- -----<u>평생 동안으로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